

(제3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제2호나목2)·3)은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.

나.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2) 및 3)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지급제한 기준	등록 제한기간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	영 제50조 제1항제1호		3년
1)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		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
2)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		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
나.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	영 제50조 제1항제2호		-
1)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		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

2)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) 영 제12조제1항제1호 ·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) 영 제12조제1항제3호 ·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)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		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락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락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락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	
---	--	---	--